

# 고시

#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421 1800	(전화번호 421 )	전결규정 12조 68호 주장 전결사항
처리기한	기안자	결	재자
시행일자	1968. 2. 12	최연리	산업국장
보존년한	기안일자	결	재자
보조	68. 2. 5		
기관	농림과장	김영근	고시제 12호
협조	농림계장	김영근	
경수참	각안참조	정경과장	과대장정리
제 목	68년도 종축검사 실시		

제1안, 내부결재

축산법 제3조 및 등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 
의하여 68년도 정기 종축검사를 다음 각안과 같이  
실시코리 합니다

제2안,

서울특별시 고시제 12호 (안)

1968년 2월 12일

48

축산법 제3조 및 등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

이하에 1968년도 권기 종축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합니다

~~1968년 2월 7일  
외울특별시장 김현욱~~

- 1. 실시 범위 외울특별시 권역
- 2. 실시 기간 1968. 3. 10 ~ 1968. 4. 9
- 3. 검사 대상 한우, 육우, 유우, 마, 면양, 산양, 돈
- 4. 검사 장소 종축검사 신청서에 의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
- 5. 검사 방법 종축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은 관할 주청에 신청하면 종축검사원이 순회하여 검사한다 합니다

제 3안, 1968. 2. 제 12 외울특별시장

수신 수신처 창조

창조 농림과장, 산법과장

제목 동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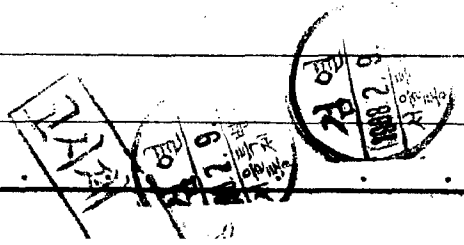
68년도 권기 종축검사를 별첨과 같이 고시 하였으며 관내 양축가에 청취히 주지시키고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

첨부, 고시문 1부 (제2안 고시문 이기 시행함)

수신처

시함 1~9

제 4안



~~1111~~

수신 공보심장 방신 산법국장

회 목 동 건

축산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취함에  
의하여 별첨과 같이 상변도 권이 종축검사를 실시할것을  
고시하였기 시본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널리 주지  
시켜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고시문 1부 끝 (제2안 고시문 이기 시행함)

참고 關係法規條

畜産法 第3條 (種畜検査) ① 서울特別市長, 釜山市長  
또는 道知事 (以下 地方長官 이라 한다) 는 農林部令 이 定하는  
바에 의하여 毎年 定期的으로 種畜検査를 實施한다

畜産法施行規則 第2條 (種畜検査期日告示)

① 法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検査는 毎年  
3月 또는 4月에 實施한다

② 서울特別市長,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は 定期  
検査와 臨時検査의 期日, 場所, 其他  
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検査期日 50日前의  
이름 告示하여야 한다.

농 립 부

속산 116- 302

1968. 2. 2.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 산업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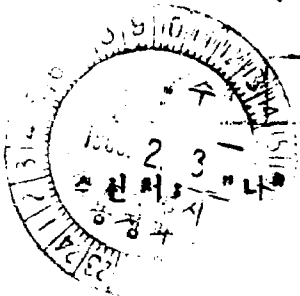
제목 종축 검사 및 종축지정 사업 철저

1. 1968. 1. 19일자 각시도 축정 과장 (농림과장) 회의시 지시 (외외 서류 25페이지 "사"람) 한바 있어 여의 기록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 리카 사모되오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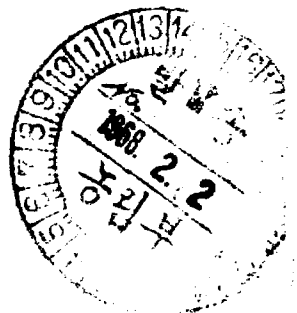
2. 본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 지시하니 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할것이며

3. 각시도의 종축 검사 실시계획에 의하여 당부 지도 받을 편성, 현지 준장 지도 육인고려 하니 기의 지시한바 있는 기한내에 종축 검사 및 종축 지정 기록을 보고하도록 각별 유념하고 감사 기간은 3월 이내여

문	접수	서울특별시	결재	인
1148	1968. 2. 2	시	수령	
		선결	처리	필
		함	지시	일
		농	사항	부
		림		장
		부		관



70



45